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구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하여왔으나,

나. 시 조례 임에도 지원대상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만으로 되어있으므로 지원에 한계가 있음

다. 따라서 지원대상에 기존 교육부장관 외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를 추가하여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라. 상위법령 제명 변경, 주무장관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음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u> 」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u> 」 ----- ----- ----- ----- -----.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u>교육과학기술부장관</u> 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 ----- <u>교육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u> ----- -----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련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제사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기숙형고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학생 식비 보조
- 인천광역시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학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숙형고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지원 추정
- 기숙형고교 운영에 필요한 학생 식비 지원 추정

나. 추계 결과

-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
 - 2013년도 : 126백만원(6개월)
 -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151백만원 소요
-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학생 식비
 - 2013년도 : 96백만원(6개월)
 -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175백만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2012년 : 강화 3개교 1,540백만원(시 500, 교육청 1,040)
- 2013년 : 강화 3개교 1,450백만원(교육부 보통교부금)
- 2014년도 이후
 - 강화 3개교 교육부 보통교부금으로 예산 반영 예정
 - 학교 추가지정 시 : 교육청 자체예산(법정전출금 활용 등)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교육위원회 이수영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입							
세출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타 (교육청)	계	222	326	326	326	326	1,526
	운영비	126	151	151	151	151	730
	학생식비	96	175	175	175	175	796

※ 산출기초(교육부 지침)

○ 운영비 : 151,000천원

- 기숙사 사 감 : 20,000천원 × 2명 = 40,000천원
- 기숙사 조리원 : 20,000천원 × 2명 = 40,000천원
- 기숙사 청소원 : 8,000천원 × 2명 = 16,000천원
- 공공요금 : 5,000천원 × 11개월 = 55,000천원

○ 학생식비 : 174,900천원

- 3,000원 × 2식 × 25일 × 106명 X 11개월 = 174,900천원